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8구합4863 수용보상금증액  
원 고 최◇○ (xxxxxx-xxxxxx)  
화성시 00면 00리 \_-\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김일진  
피 고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  
대표자 사장 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변 론 종 결 2010. 4. 1.  
판 결 선 고 2010.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392,084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14.부터 2010.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8,921,92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재결의 경위

#####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도로사업(서 ▷ ♡-오산-평택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 화성시 3차)(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 2005. 6. 2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82호

##### 나. 사업시행자 : 피고

#####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10.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가 화성시 00면 00리 \_\_\_\_\_ 지상에서 영위하고 있는 경기중  
 균연구소의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
- 수용개시일 : 2007. 12. 13.
- 손실보상금 : 47,000,000원(원고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한 영농보상과

♣☆☆☆연구소에 대한 폐업보상주장은 배척됨)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3. 2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연구소에 관하여 영업손실보상이 아닌 농작물실제소득인정 기준에 의한 영농보상을 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3-44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한 실제소득 입증자료 등이 없어 실제소득 기준에 의한 영업손실보상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년경부터 종업원 다수를 고용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버섯 등을 재배하는 영업시설장으로 보아 평가·보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영업손실(3개월 휴업)로 보상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의 주장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고시 제4조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가사 법규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작물 총수입에 대한 입증자료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경작자가 실제 얻은 농작물 총수입을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정당보상의 원칙 및 행정규칙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위헌적인 규정이다.

(나) 세무자료에 의하여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것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7호 소정의 소득 입증자료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한바, 원고와 ■♠♠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의 2003. 6. 29.부터 2005. 6. 28.까지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 판매로 인한 농작물 총수입은 162,057,690원이고, 원고가 운영하던 ♣☆☆☆연구소의 2003. 6. 29.부터 2005. 6. 28.까지의 농작물 총수입은, 갑 제23호증의 2(2004년 사업장현황신고)와 갑 제23호증의 3(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2004년도 소득 입증자료로 삼는 경우, 277,088,596원이며, ♥♥♥♥과 ♣☆☆☆연구소의 농작물 총수입을 합한 439,146,286원(= 162,057,690원 + 277,088,596원)에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나타난 전체소득률 56%를 곱하면 정당한 영농보상금은 245,921,920원이므로 여기서 이의재결금액 47,000,000원을 뺀 198,921,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연구소의 농작물 총수입과 관련하여, 위 갑 제23호증의 2, 3이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소득 입증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소득 입증자료인 갑 제18호증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 138,642,461원과 앞서 본 ♥♥♥♥의 농작물 총수입 162,057,690원을 합한 300,700,151원에 전체소득률 56%를 곱한 금액 168,392,084원에서 이의재결금액 47,000,000원을 뺀 121,392,0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주장의 예비적 청구는 원고의 편입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주위적 청구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것이어서, 주위적 청구의 수량적 일부에 불과하고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주위적 청구에 포함시켜서 판단하기로 한다).

##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농작물로서의 버섯을 재배하여 완성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② 원고는 ♠☆☆☆연구소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버섯 재배 등을 2000년경부터 시작하였는바, 이는 약 2,400평의 토지(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농지원부에 현황이 대지로, 버섯재배사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로 등재됨)에 경량철골조의 재배사(내부에 버섯 재배 및 출하에 필요한 제반 기계설비 등을 갖추)를 갖추고 종업원 다수를 고용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행한 영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영농보상이 아니라 휴업보상을 함이 타당하고, ③ 원고가 재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느타리버섯배지와 버섯종균은 영농보상의 대상인 농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④ ♥♥♥♥과 ♠☆☆☆연구소는 각기 별개의 사업체로 원고가 ■♠♠과 동업으로 ♥♥♥♥을 경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와 ■♠♠이 동업으로 ♥♥♥♥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 명의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을 받아 원고와 ■♠♠이 내부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나누면 될 뿐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자신의 소유였던 화성시 00면 00리 \_\_\_\_-(분할 후 \_\_\_\_-) 대 566㎡, 같은 리 \_\_\_\_-(분할 후 \_\_\_\_-) 답 483㎡, 같은 리 \_\_\_\_-(분할 후 \_\_\_\_-) 답 359㎡, 같은 리 \_\_\_\_- 답 1,002㎡(이하 '이 사건 원고소유 토지'라 한다)와 자신과 ■♠♠이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였던 같은 리 \_\_\_\_- 답 2,261㎡, 같은 리 \_\_\_\_-(분할 후 \_\_\_\_-) 답 1,153㎡(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하며, 이 사건 원고소유 토지와 이

사건 공유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에서 느타리버섯배지, 팽이버섯종균을 배양하여 전국의 병버섯 재배 농가들에 분양하고,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을 재배하여 전국의 농산물 도매시장에 산지♣☆을 통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판매하여 왔다.

(2) 그런데 원고는 2000년경부터 농산물 판매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장에서 생산한 버섯류를 ♥♥♥♥과 ♣☆☆☆연구소의 제품으로 구분하여 판매하여 왔는데, ♥♥♥♥은 이 사건 공유토지 지상 버섯재배사에서 원고와 ■♠♠이 각 1/2 지분씩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경영하였고, ♣☆☆☆연구소는 이 사건 원고소유 토지 지상 버섯재배사에서 원고가 단독으로 경영하던 것이었다.

(3) ♥♥♥♥에서는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을 생산하여 ■♠♠ 명의로 산지♣☆인 □△△△△△조합(이하 '♥■■■■'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국청과 주식회사, 성남유통센터, ♣☆중앙회 ▶◇◇◇◇, 서울청과, 경기청과에 판매하였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는 직접 판매하였으며, ♣☆☆☆연구소는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을 생산하여 원고 명의로 위 ♥■■■■을 통하여 ♣☆중앙회 ▶◇◇◇◇(이하 '▶◇◇◇◇'이라 한다), 한국청과 주식회사에 판매하였고,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중앙회 ▶◇◇◇◇에는 직접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팽이버섯종균과 느타리버섯배지를 배양하여 전국 다♣의 버섯 재배 농가에 직접 판매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도로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피고는 2006.

3. 17.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을 원고와 ■♠♠으로부터 협의매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6, 13 내지 15, 20, 25, 3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영농보상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농업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비록 일부 필지의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이고,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지력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그 지상에 버섯재배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농지법상의 농지인지의 판단은 지목이 농지인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고, 또한 직접 지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위 토지상의 시설물 내에서 버섯 등을 직접 재배한 것이 사실인 이상 실제이용현황의 관점에서 농지법상 농지라고 볼 것이다.

(나) 한편, 농지의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면서(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영농행위 보다 영업과 판매가 주목적인 경우에는 영업보상에 해당하고 영농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원고의 영농형태가 어느 정도 영업과 판매 목적을 갖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전통적인 농업방식을 벗어난 최근의 특수작물의 재배 등의 농업부문에서는 영업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영역(버섯재배장, 화훼재배장 등)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에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중 영농보상 규정이 변경되어 온 점, 영농보상에 영업보상의 성격이 어느 정도 가미되었음을 전제로 하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중 영업보상조항(제45조)과 영농보상 조항(제48조)의 관계가 문제되나, 헌법과 농지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영농보상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일응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제48조가 우선 적용되고 이와 달리 제45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은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제45조를 적용하여야 할 사정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울러 원고의 버섯재배업 등은 특별히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원고의 영농방식이 대규모의 기업적인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도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원고와 ■♠♠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버섯류를 재배·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영농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①, ②, ③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리고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그 농경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별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농경지에 재배하던 작물을 대체농경지로 이식하여 계속 영농을 할 수 있어 영농중단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비록 장소를 이전하여 이전과 같은 형태의 영농을 계속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설물 이전과 설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그 시설물이 갖추어진다고 하여 바로 버섯 등이 생산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영농보상의 대상은 이전가능성이 아닌 보상의 필요성이 기준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영업보상에서의 휴업보상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의 이와 관련된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영농보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나아가 영농보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이 이 사건 공유토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0, 38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으로서 원고와 ■♠♠이 번갈아 가며 업무집행조합원인 대표의 역할을 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의 몫까지 합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그 조합재산인 영농보상청구권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으로부터 임의적소송신탁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구소는 물론 ♥♥♥♥과 관련된 영농손실까지 보상하여야 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④ 주장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고시의 법적 성격 및 이 사건 고시 제4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입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인바(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3311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는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의 수권을 받아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인 영농손실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고시 제4조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에 관하여는 농작물의 거래현실에 비추어 모든 거래자료를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이를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넓은 판단권과 형성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4조는 제1 내지 7호에서 농작물 총수입에 관한 입증자료로서 다양한 주체가 작성한 자료를 입증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4조는 예시적인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고시 제4조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자료가 아닌 열거된 자료만을 농산물 총 수입의 입증자료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정당한 보상을 지향하는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을 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반드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이나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행정규칙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가)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세무자료를 이 사건 고시 제4조에서 정한 소득 입증자료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헌법 제23조 제2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과 공익사업법 제77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4조의 규정 및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손실은 구체적인 영농장소, 농작물의 종류와 시기 등에 따라서 그 정도를 달리하는 것인 점, 농업손실보상액은 경작자의 실제수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서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영농인이 영농으로 인하여 얻은 실제수입은 구체적인 납세자료나 거래처의 증빙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입증의 방법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서류는 실제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농작물 총수입 산정을 위한 입증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고시 제4조에서 정한 입증방법을 선택하거나 그 밖에 달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농작물총수입을 입증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7호에서 정한 '국가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국가가 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 발급한 서류뿐만 아니라 국가가 과세관청으로서 발급한 서류도 그 작성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납세의무자가 보상금 등을 과다수령할 목적으로 허위로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세금신고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서류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가 발급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역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7호에 정한 입증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4조에서 농작물 총수입은 앞서 본 각 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23호증의 2(2004년 사업장현황신고), 갑 제23호증의 3(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연구소와 관련된 원고의 2004년도 수입금액이 286,863,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갑 제23호증의 2(2004년 사업장현황신고)와 갑 제23호증의 3(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은 원고의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닌 점, 또한 이 사건에서 위 갑 제23호증의 2(2004년 사업장현황신고)와 갑 제23호증의 3(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에 기재된 수입금액에서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원고는 ♠○○○○, ▷♠, ▶◇◇◇◇에 대한 직접 판매대금과 판매경비의 비율이 약 10%인 점에 비추어 위 수입금액의 10%를 판매경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수입금액의 10%를 판매경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23호증의 2(2004년 사업장현황신고)와 갑 제23호 증의 3(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원고의 농작물 총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입증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정당한 영농보상금의 산정

(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 11 내지 14,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7호에서 정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 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중 ◆▲▲ 제2조 제5호 소정의 ♥◆◆◆◆조합인 사실, ♠○○○○, ▷♠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각 도매시장법인인 사실, ▶◆◆◆◆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에 해당하는 사실, 그리고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2년간인 2003. 6. 29.부터 2005. 6. 28.까지 사이에 ♥♥♥♥과 ♠☆☆☆연구소에서 위 각 판매처에 판매한 팽이 버섯과 느타리버섯의 판매금액, 판매경비와 판매금액에서 판매경비를 뺀 실제수입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체소득률이 56.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거래처	기간	판매금액	판매경비	실제수입액
♥♥♥♥	♥■■■■	2003.6.29.~2003.12.31.	53,971,300원	4,136,738원	49,834,562원
		2004.1.1.~2004.12.31.	64,223,500원	5,462,152원	58,761,348원
	▷♠ 청과물	2003.6.29.~2003.12.31.	30,767,700원	3,594,847원	27,172,853원
		2004.1.1.~2004.12.31.	29,748,200원	3,459,273원	26,288,927원
♠☆☆☆	♥■■■■	2003.6.29.~2003.12.31.	584,000원	40,880원	543,120원

연구소		2004.1.1.~2004.12.31.	8,826,500원	724,280원	8,102,220원
	▷♣ 청과물	2003.6.29.~2003.12.31.	14,841,600원	1,359,123원	13,482,477원
		2004.1.1.~2004.12.31.	24,259,300원	2,318,100원	21,941,200원
		2005.1.1.~2005.6.28.	4,761,400원	366,507원	4,394,893원
	▷♣	2004.1.1.~2004.12.31.	99,595,000원	10,168,075원	89,426,925원
	◆♥ 공판장	2003.6.29.~2003.12.31.	528,200원	36,974원	491,226원
		2004.1.1.~2004.12.31.	280,000원	19,600원	260,400원
합계	2003.6.29.~2005.6.28.	332,386,700원	31,686,549원	300,700,151원	

(나) 피고는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 12 내지 14가 이 사건 고시 제4조 소정의 소득 입증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 2, 7호에서 정한 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공판장, 생산자단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출하자의 성명·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소정의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2년간인 2003. 6. 29.부터 2005. 6. 28.까지의 이 사건 농장의 농작물 총수입은 300,700,151원이 되고, 이 사건 고시 제3조에 따라 위 농작물 총수입 300,700,151원에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체소득률인 56.3%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소득률 56%를 곱하여 보면, 이 사건 농장에 대한 정당한 영농보상금은 168,392,084원(원 이하 버림)이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392,084원(= 이 사건 농장에 대한 정당한 영농보

상금 168,392,084원 -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  
일 다음날인 2007. 12.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상 _____
	판사	이승훈 _____
	판사	김기동 _____



서울 행정법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8구합22570 수용보상금증액  
 원 고 이순기 (620111-1801114)  
 김천시 부곡동 114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김영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호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김성룡

변 론 종 결 2009. 7. 9.  
 판 결 선 고 2009. 8.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0,120,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3.부터 2009.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5,330,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재결의 경위

#####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 2005. 7. 2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26호

#####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4.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김천시 부항면 지좌리 553-1, 554 지상에 있는 제1 버섯재배사, 제2 버섯재배사 등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버섯종균현물, 종균병, 종균병뚜껑, 종균바구니(이하 '이 사건 버섯종균현물'이라 한다), 혼합기, 살균기, 보일러, 다목적 버섯배양기 등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축물, 버섯종균현물, 공작물을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1,600,933,740원(이 사건 건축물, 공작물에 대한 보상금 1,352,991,750원 + 이 사건 버섯종균현물에 대한 보상금 50,000,000원 + 버섯종균



등의 영림업에 대한 영농보상금 149,941,990원 +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보상금 48,000,000원)

- 수용개시일 : 2008. 6. 1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8. 28.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을 1,635,897,490원으로 증액(이 사건 건축물, 공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1,387,955,500원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보상금은 수용재결과 같이 유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 (1) 지장물손실보상금의 증액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금은 이 사건 지장물의 실제 설치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정당한 보상금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므로, 정당한 보상금으로 이 사건 건축물,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원감정에 의한 보상액에 제2 버섯재배사의 면적 중 공부상 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이 사건 버섯종균현물에 대하여는 법원감정에 의한 보상액에 버섯종균현물에 대한 보상액 55,949,042원을 더한 금액을 구한다.

#### (2) 영농손실보상금의 증액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44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조가 농작물 총수입에 대한 입



증자료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경작자가 실제 얻은 농작물 총수입을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다.

(나) 원고의 2003. 7. 25.부터 2005. 7. 24.까지 농작물 총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200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입증자료로 삼으면, 위 자료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은 1,065,974,357원이고, 이에 이 사건 고시 제5조에 따라 피고가 정한 소득률 57.9%를 곱하면 정당한 영농보상금은 최소한 617,199,152원이므로, 정당한 영농보상금으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7. 13.경부터 김천시 부항면 지좌리 553-1, 554 지상 제1 버섯재배사(1,485㎡), 제2 버섯재배사(공부상 면적은 128㎡이나 실제 면적은 168㎡이다)에서 버섯종균 등의 재배·판매업을 영위해 왔다(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버섯재배사에 2층 및 옥탑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그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1층의 중간부에 총 18개의 기둥을 설치하였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냉동설비를 설치한 다음 2005년경에 모든 냉동설비를 대폭 수리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3. 8.경부터 김천시 봉산면 인의리 610 외 3필지 지상에 버섯재배사 2동(2,788.58㎡ 및 75㎡), 직원숙소 등을 짓고 그곳에서도 버섯종균 등의 재배·판매업을 영위해 왔다(이하 '봉산면 농장'이라 한다).

(4) 이후 원고는 200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농장의 매출액을 1,065,974,357원으로 신고하였고, 봉산면 농장의 매출액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5) 피고는 이 사건 농장에 대한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3. 7. 26.로부터 2년 동안의 영농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고시 제4조에 따라 농산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인정되는 북대구공판장, 가락공판장, 대산농업협동조합과 원고 사이의 거래 자료를 토대로 위 기간 동안의 판매대금 293,082,650원에서 판매비용 34,115,473원을 공제한 258,967,177원을 농작물 총수입으로 하고, 이에 소득률 57.9%를 곱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149,941,990원으로 산정하였다.

(6)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들 및 법원감정(이 법원의 중앙감정평가 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에 관하여는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상회할 경우 취득가격으로 평가하고, 공작물은 공작물의 종류, 규모, 설치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하차비, 운반비, 설치비, 기타 잡비를 포함하여 평가하되, 이전이 곤란한 공작물은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였다.

수용재결감정(평균)은 이 사건 건축물, 공작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1,352,991,750원을, 이 사건 버섯종균현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00,000원을, 이의재결감정(평균)은 이 사건 건축물, 공작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1,387,955,500원을, 이 사건 버섯종균현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00,000원을, 법원감정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922,626,000원(제2 버섯재배사는 1m<sup>2</sup>당 단가를 401,000원으로, 면적을 128m<sup>2</sup>으로 하여 51,328,000원을 산정하였다)을, 이 사건 공작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627,356,000원을, 이 사건 버섯종균현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54,000,000원을 각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27호증, 을 제10, 11, 17, 18, 19, 20호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축탁 및 감정보완축탁결과, 이 법원의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보완축탁결과, 이 법원의 김천세무서장, 삼창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지장물 손실보상금의 증액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재결감정들과 법원감정에 감정평가상의 위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 버섯재배사에는 2층 및 옥탑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그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중간부에 총 18개의 기둥이 설치되어 있고, 냉동설비는 가격시점 당시 대폭 수리되어 상태가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익사업법 제67조 제1항에는 보상액의 산정은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버섯종균현물에 관하여 가격시점인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의 정당한 보상액이 법원감정의 보상액 54,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농촌진흥청, 사단법인 전국버섯생산자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가격시점에는 버섯종균병에 담긴 버섯종균현물은 존재하지 않아서 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이 법원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지장물의 현황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다만, 이 사건 제2 버섯재배사에 관하여는 법원감정에서 정한 단위 면적당 가격에 실제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채택하기로 한다.

법원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1,620,022,000원{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922,626,000원 + 제2 버섯재배사 중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는 실제 면적에 대한 보상금 16,040,000원(40m'×401,000원/m') + 이 사건 공작물에 대한 보상금 627,356,000원 + 이 사건 버섯종균현물에 대한 보상금 54,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 182,066,450원(1,620,022,000원 - 1,437,955,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영농손실보상금의 증액 주장에 관하여

### (가) 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한 영농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고시된 이 사건 고시는 제3조에서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농작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면적 × 소득률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1 내지 7호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



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세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 사건 고시 제4조의 위헌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제4조에서 농작물 총수입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농작물의 총수입의 입증자료에 관하여는 농작물의 거래현실에 비추어 모든 거래자료를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이를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넓은 판단권과 형성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4조는 제1 내지 7호에서 농작물 총수입에 관한 입증자료로서 다양한 주체가 작성한 자료를 입증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 제4조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자료가 아닌 열거된 자료만을 농산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정당한 보상을 지향하는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을 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반드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 정당한 영농보상금에 관하여

그렇다면, 공익사업법 제48조 제2항 및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농장에 대한 영농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1) 농산물 총수입에 관하여

가) 2003. 7. 25.부터 2003. 12. 31.까지는 이 사건 고시 제4조에서 정한 입증자료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으므로, 농산물 총수입이 0원이 된다.

나)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농산물 총수입이 470,946,284원이 된다.

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김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이 사건 고시 제4조에서 정한 입증자료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이 사건 고시 제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보상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23조 제2항과 농업손실에 대하여 농지의 단위면적당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정한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 본문에 부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7호에서 정한 '국가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국가가 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 발급한 서류뿐만 아니라 국가가 과세관청으로서 발급한 세금고지서,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의 자료로서 그 작성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납세의무자가 보상금 등을 과다수령할 목적으로 허위로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세금신고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그 내용이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서류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작성된 자료로서 원고가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을 것을 알고 영농보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실제 농작물의 총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은 것처럼 관계 서류를 꾸며서 세금 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그 신고액이 해당 기간의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기타 자료에 의해 온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는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7호에서 정한 국가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② 다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2004년의 매출액은 1,065,974,357원이 되지만, 앞서 본 이 사건 농장과 봉산면 농장의 업종, 규모 등에 비추어 위 매출액은 두 농장의 매출액이 합산된 것이고, 각 농장의 매출액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 금액의 전부가 아닌 1/2인 532,987,179원을 농작물 총수입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나아가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는 위 매출액 532,987,179원에 이 사건 농장의 매출액에 대한 판매경비의 비율로 보이는 11.64%(피고가 정한 영농보상금에 나타난 매출액 대비 판매경비의 비율)를 곱하여 산정하면 62,039,708원이 된다.

④ 따라서, 2004년의 농산물 총수입은 매출액 532,987,179원에서 62,039,708원을 공제한 470,947,471원이 된다(위 금액에는 원고가 대산농업협동조합을 통해 주식회사 중앙청과와 사이에 거래한 2004년분 농산물 총수입 25,258,699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2005. 1. 1.부터 2005. 7. 25.까지는 대산농업협동조합, 가락공판장, 북대구공판장에 대한 매출액에서 판매경비를 공제하면 농산물 총수입은 233,708,478원이 된다(을 제17, 18호증).

## 2)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간인 2003. 7. 26.부터 2005. 7. 25.까지의 이 사건 농장의 농작물 총수입은 704,655,949원(470,947,471원 + 233,708,478원)이 되므로, 이 사건 고시 제3조에 따라 위 농작물 총수입 704,655,949원에 피고가 인정하는 소득률 57.9%를 곱하여 보면, 이 사건 농장에 대한 청당한 영농보상금은 407,995,794원이 된다.

(3) 정당한 손실보상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 182,066,500원(1,620,022,000원 - 1,437,955,500원)과 정당한 영농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영농보상금의 차액 258,053,804원(407,995,794원 - 149,941,990원)을 합한 440,120,3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8. 6.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8.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 승 \_\_\_\_\_

판사      정성완      국외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www.scok1.go.kr



공정거래위원회

재판장 \_\_\_\_\_

판사      장종철 \_\_\_\_\_





# 정본입니다.

2009. 8. 26.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양 창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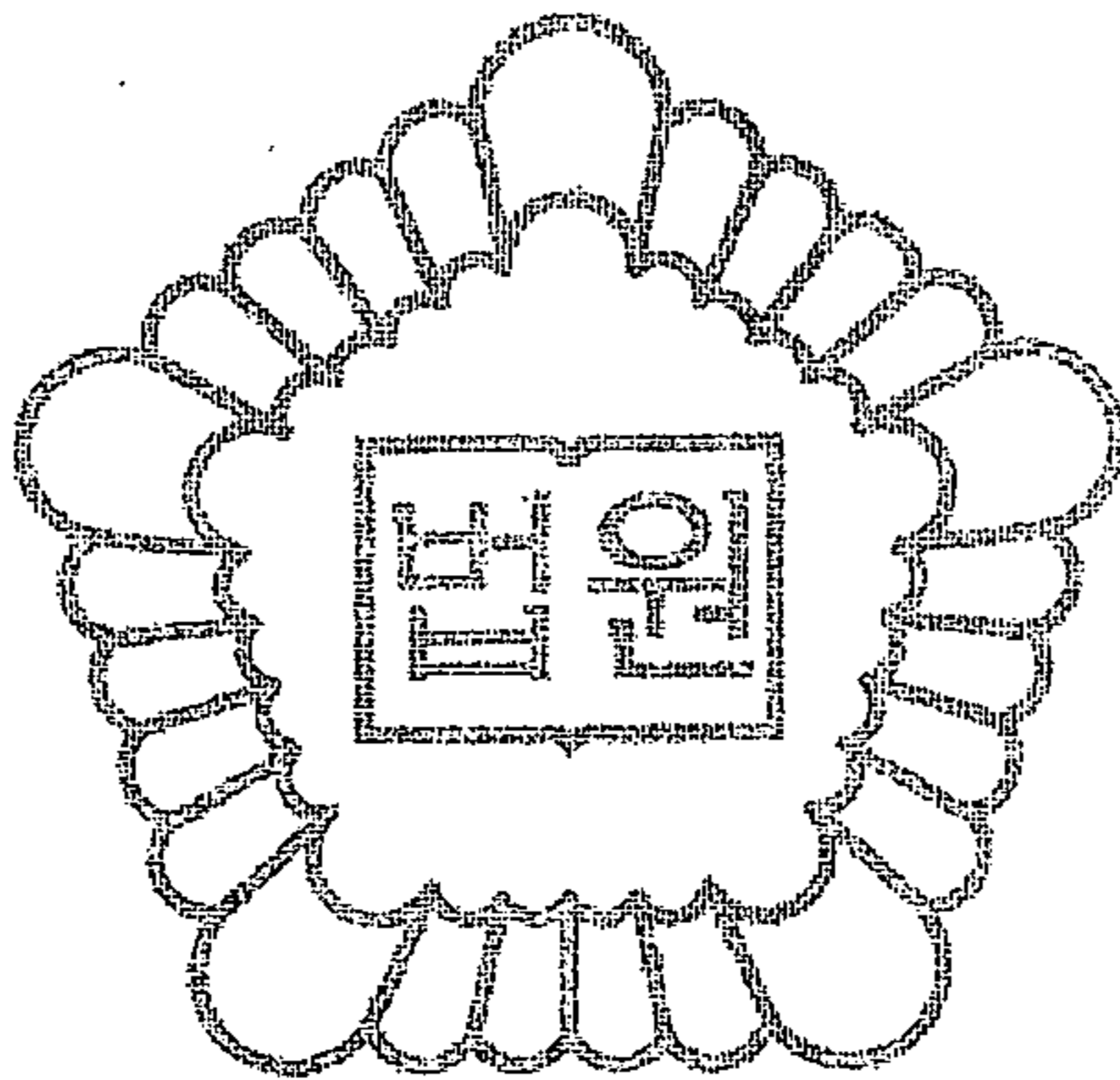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단말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9누28607

# 판 결 서



##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 제 9 행정부

### 판 결

사 건 2009누28607 수용보상금증액

원고, 피항소인 이순기 (620111-1801114)  
 김천시 부곡동 1141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에이팩스  
 담당변호사 김성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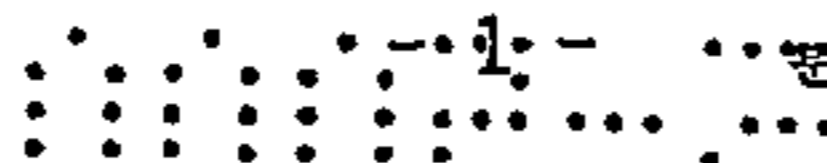
제 1 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22570 판결

변 론 종 결 2010. 6. 10.

판 결 선 고 2010. 7. 2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67,796,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3.부터 2010.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5,330,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 2005. 7. 2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26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4.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김천시 부항면 지좌리 553-1, 554 지상에 있는 제1 버섯재배사, 제2 버섯재배사 등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버섯종균현물, 종균병, 종균병뚜껑, 종균바구니(이하 '이 사건 버섯종균현물'이라 한다), 혼합기, 살균기, 보일러, 다목적 버섯배양기 등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축물, 버섯종균현물, 공작물을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1,600,933,740원(이 사건 건축물, 공작물에 대한 보상금 1,352,991,750원 + 이 사건 버섯종균현물에 대한 보상금 50,000,000원 + 버섯종균 등의 영립업에 대한 영농보상금 149,941,990원 +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보상금 48,000,000원)
- 수용개시일 : 2008. 6. 1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8. 28.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을 1,635,897,490원으로 증액(이 사건 건축물, 공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1,387,955,500원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보상금은 수용재결과 같이 유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7. 13.경부터 김천시 부항면 지좌리 553-1, 554 지상 제1 버섯재배사(1,485㎡), 제2 버섯재배사(공부상 면적은 128㎡이나 실제 면적은 168㎡이다)에서 버섯종균 등의 재배·판매업을 영위해 왔다(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버섯재배사에 2층 및 옥탑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그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1층의 중간부에 총 18개의 기둥을 설치하였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냉동설비를 설치한 다음 2005년경에 모든 냉동설비를 대폭 수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8.경부터 김천시 봉산면 인의리 610 외 3필지 지상에 버섯 재배사 2동(2,788.58㎡ 및 75㎡), 직원숙소 등을 짓고 그곳에서도 버섯종균 등의 재배·판매업을 영위해 왔다(이하 '봉산면 농장'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0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농장의 매출액을 1,065,974,357원으로 신고하였고, 봉산면 농장의 매출액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농장에 대한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3. 7. 26.로부터 2년 동안의 영농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고시 제4조에 따라 농산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인정되는 북대구공판장, 가락공판장, 대산농업협동조합과 원고 사이의 거래 자료를 토대로 위 기간 동안의 판매대금 293,082,650원에서 판매비용 34,115,473원을 공제한 258,967,177원을 농작물 총수입으로 하고, 여기에 소득률 57.9%를 곱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149,941,990원으로 산정하였다.

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들 및 제1심 법원감정(제1심 법원의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에 관하여는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상회할 경우 취득가격으로 평가하고, 공작물은 공작물의 종류, 규모, 설치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하차비, 운반비, 설치비, 기타 잡비를 포함하여 평가하되, 이전이 곤란한 공작물은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였다. 그 보상금 평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수용재결(평균액)	이의재결(평균액)	제1심 감정
건축물 및 공작물	1,352,991,750원	1,387,955,500원	1,549,982,000원 -건축물 922,626,000원 -공작물 627,356,000원
버섯종균현물	50,000,000원	50,000,000원	54,000,000원

※ 제1심 법원감정은 제2 버섯재배사에 대하여 1㎡당 단가를 401,000원으로, 면적을 128㎡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6, 27호증, 을 10, 11, 17,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미래세한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김천세무서장, 삼창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지장물 손실보상금의 증액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금은 이 사건 지장물의 실제 설치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정당한 보상금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므로, 정당한 보상금으로 이 사건 건축물,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원감정에 의한 보상액에 제2 버섯재배사의 면적 중 공부상 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이 사건 버섯종균현물에 대하여는 법원감정에 의한 보상액에 버섯종균현물에 대한 보상액 55,949,042원을 더한 금액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재결감정들과 제1심 법원감



정에 감정평가상의 위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 버섯재배사에는 2층 및 옥탑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그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중간부에 총 18개의 기둥이 설치되어 있고, 냉동설비는 가격시점 당시 대폭 수리되어 상태가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익사업법 제67조 제1항에는 보상액의 산정은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버섯종균현물에 관하여 가격시점인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의 정당한 보상액이 제1심 법원감정의 보상액인 5,4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농촌진흥청, 사단법인 전국버섯생산자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원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지장물의 현황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제1심 법원감정을 채택하되, 다만 이 사건 제2 버섯재배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감정에서 정한 단위 면적당 가격에 실제 면적을 곱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면, 합계 1,620,022,000원(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922,626,000원 + 제2 버섯재배사 중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는 실제 면적에 대한 보상금 16,040,000원(40m'×401,000원/m') + 이 사건 공작물에 대한 보상금 627,356,000원 + 이 사건 버섯종균현물에 대한 보상금 5,400만 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법원감정 결과는 이 사건 지장물 중 냉동설비가 실제로 수리된 적이 없음에도 최근 대폭 수리되었음을 전제로 관찰감가법을 사용하여 냉동설비의 감가상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 182,066,500원(1,620,022,000원 - 1,437,955,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영농손실 보상금의 증액 청구 부분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44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조가 농작물 총수입에 대한 입증자료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경작자가 실제 얻은 농작물 총수입을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다.

(2) 원고의 200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면, 2003. 7. 25.부터 2년간의 원고의 농작물 총수입은 1,065,974,357원이고, 이에 이 사건 고시 제5조에 따라 피고가 정한 소득률 57.9%를 곱하면 정당한 영농보상금은 최소한 617,199,152원이므로,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판 단

##### (1) 이 사건 고시 제4조의 위헌 여부

공익사업법(2009. 4. 1. 법률 제9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항은 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를 받아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9. 11. 13 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통계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고시된 이 사건 고시는 제3조에서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농작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면적 × 소득률」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1내지 7호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세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이에 피고는 위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의한 실제소득을 이 사건 고시에 나열된 7가지 방법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8조 제1항에 의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고시가 실제소득의 입증방법을 거기에 열거된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헌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과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고, 농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상황 등 고유의 사정이 반영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서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입증방법을 예시한 데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거기에 열거된 서류 이외의 입증방법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실제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 및 이 사건 고시가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2) 정당한 영농보상금의 산정

㉞ 위에서 본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 그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그리고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 농지 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 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 농지의 총수입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 이전 2년간의 연간 평균 총수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이 사건 고시 제2



조 제1호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실제 얻은 영농수입액 상당을 지급하되, 실제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통계소득을 기초로 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5. 7. 26. 이전 2년 중 원고가 얻은 실제 영농수입은 아래와 같이 일부 기간은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가 없고, 나머지 기간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수입이 기간별로 상이하므로 각각의 기간을 나누어 그 보상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① 2003. 7. 26.부터 2003. 12. 31.까지

이 사건 고시 제4조에서 정한 입증자료나 기타 실제소득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통계를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의 영농손실액을 산정할 것인바, 이 사건 농장이 있던 경북 지역의 2003년도 특용작물 재배농의 농작물 총수입이 46,078,000원, 경지면적은 25,154.44m<sup>2</sup>이므로(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03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은 1,831.8원(46,078,000원/25,154.44m<sup>2</sup>)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2003. 7. 26.부터 2003. 12. 31.까지 159일간의 이 사건 농장의 영농손실액을 계산하면 1,319,031원[=1,831.8원 × 1,653m<sup>2</sup> × (159/365)]이 된다.

②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갑 9호증과 이 법원의 김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장의 2004년도 영농수입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당해 연도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는 이 사건 고시 제4조에 열거된 입증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위 기간 동안의 실제수입을 산정한다.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 9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2004년도 매출액은 1,065,974,357원이 되지만,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농장과 봉산면 농장의 업종, 규모 등에 비추어 두 농장의 매출액이 합산된 것으로 보이는바, 갑 29, 31, 32, 35, 3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매출액에 대한 위 각 농장 매출액의 비율을 특정하여 구분하기가 어렵고, 달리 그 비율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 위 각 농장에서 생산된 버섯 등의 품종이나 이에 대한 판매 수익은 유사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농장과 봉산면 농장의 버섯재배사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구분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농장의 버섯재배사 면적 합계 4,516.58m<sup>2</sup>(이 사건 농장 1,653m<sup>2</sup> + 봉산면 농장 2,863.58m<sup>2</sup>)에 대한 이 사건 농장의 버섯재배사 면적 비율에 따라 위 총매출액 1,065,974,357원 중 이 사건 농장의 매출액을 산출하면 390,130,499원[=1,065,974,357원×(1,653/4,516.58)]이 된다.

한편 농작물 총수입은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바(이 사건 고시 제4조), 이 사건 농장 매출액의 판매경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증자료는 없고,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영농손실액 보상협의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고시 제4조에 따라 농산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인정되는 북대구공판장, 가락공판장, 대산농업협동조합과 원고 사이의 거래자료를 토대로 영농손실보상 산정기간 동안의 판매대금 293,082,650원에, 그 판매비용을 34,115,473원으로 산정한 바 있으므로





로, 같은 비율을 위 매출액에 적용하면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는 45,413,106원 [=390,130,499원×(34,115,473원/293,082,650원)]이 된다.

따라서 2004년의 농산물 총수입은 매출액 390,130,499원에서 45,413,106원을 공제한 344,717,393원이 된다(위 금액에는 원고가 대산농업협동조합을 통해 주식회사 중앙청과와 사이에 거래한 2004년분 농산물 총수입 25,258,699원이 포함되어 있다).

③ 2005. 1. 1.부터 2005. 7. 25.까지

이 사건 고시 제4조가 정한 입증자료인 을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산농업협동조합, 가락공판장, 북대구공판장에 대한 매출액에서 판매경비를 공제한 농산물 총수입은 233,708,478원이 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간인 2003. 7. 26.부터 2005. 7. 25.까지의 이 사건 농장의 농작물 총수입은 579,744,902원(1,319,031원 + 344,717,393원 + 233,708,478원)이 되므로, 이 사건 고시 제3조에 따라 위 총수입금에 피고가 인정하는 소득률 57.9%를 곱하여 계산하면, 이 사건 농장에 대한 정당한 영농보상금은 335,672,298원이 된다.

## 5. 추가 지급할 손실보상금의 산정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인정한 보상금의 차액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82,066,500원(1,620,022,000원 - 1,437,955,500원)과 영농보상금 185,730,308원(335,672,298원 - 149,941,990원)을 합한 367,796,8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8. 6.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대	_____
	판사	이주현	_____
	판사	이언학	_____





# 정본입니다.

2010. 7. 26.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황종삼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단말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